

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1. 7. 1 선고 2020나13371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

원고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

피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

담당변호사 윤승현

변 론 종 결 2021. 5. 20.

판 결 선 고 2021. 7. 1.

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. 7. 24. 선고 2019가합57786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85,123,214원 및 이에 대한 2019. 5. 31.부터 2021. 7. 1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680,035,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9. 5. 29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

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85,123,2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9. 5. 29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

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(별지 포함)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제1심에서 분리·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).

2.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

가.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각 “피고 D”를 각 “피고”로, 각 “피고 C”을 각 “C”으로,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“E은행”을 “주식회사 E(이하 ‘E은행’이라 한다)”으로 고쳐 쓴다.

나.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 ④ 이에 대하여 A과의 공동투자약정에 기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각 1/2 지분권은 피고 소유인데, 피고는 공동투자관계를 명확히 하고, A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A, 채권최고액을 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, 위 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담보권자로서 위 매출채권에 대하여 위 토지 및 건물 중 A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1/2 지분을 대물변제받는 것이므로 부인할 행위의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갑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는 2013. 5. 14.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A, 채권최고액을 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, 이후 피고는 2017. 2. 3.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① 피고의 A에 대한 매출채권은 피고와 A 사이의 공동투자약정과 별개의 것으로 보이고, 위 근저당권이 피고의 공동투자지분 가액 이외에 별도로 피고의 A에 대한 매출채권까지 포괄적으로 담보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빙자료가 없으며, 오히려 갑 제3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근저당권은 그 설정 직후 법무법인의 인증이 이루어진 피고와 A 사이의 공동투자약정에 기한 피고의 위 토지와 건물 가액에 관한 1/2 지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, ② 설령 A이 피고에게 위 매출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로서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라고 할 것인 점, ③ 위 토지 및 건물은 A이 소유하는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,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피고는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신의 공동투자지분 가액뿐만 아니라 그 매출채권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행위는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』

다.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1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는 2017. 1.경 A에게 물품대금 미수채권이 많아져 더 이상 자재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,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. 2. 3.경 A에 대한 위 물품대금 미수채권은 660,000,000원 상당액에 이르는 점, ② 피고와 A은 적어도 공동투자관계에 있었으므로, 피고는 A의 자금상태 악화에 관하여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피고 또한 A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A과 위 공동투자약정에 관한 정산합의(을 제3호증)를 체결하였고, 그로 인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. 2. 3. A으로부터 매매 등 명목으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은 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 』

라.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0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 2) 가액배상의 범위

가) 갑 제3호증의 1, 2, 갑 제6호증, 을 제1, 3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,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E은행 여신관리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위 토지 및 건물의 2019. 5. 10. 무렵 시가가 4,241,831,200원인 사실, 위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2017. 2. 3. 무렵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합계 2,881,760,240원(=2012. 11. 13.자 대출원금 1,800,000,000원+ 그에 대한 약정이자 3,044,712원+ 2015. 6. 15.자 대출원금 1,077,000,000원+ 그에 대한 약정이자 1,715,528원)인 사실(A의 E은행에 대한 나머지 채무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), 피고는 A과의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 가액에 관하여 1/2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, 피고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A, 채권최고액을 25억 원,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가액은 680,035,480원[=(위 토지 및 건물 시가 4,241,831,200원 - E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,881,760,240원)×A의 지분 비율 1/2]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나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의 A에 대한 매출채권액 660,000,000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위 토지 및 건물의 시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A에 대한 매출채권은 피고와 A 사이의 공동투자약정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고, 위 근저당권이 피고의 공동투자지분 가액 이외에 별도로 피고의 A에 대한 매출채권까지 포괄적으로 담보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680,035,480원 및 그중 ①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94,912,26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. 5. 29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. 5. 31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. 7. 24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인 285,123,214원(=680,035,480원 - 394,912,266원)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. 5. 29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. 5. 31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. 7. 1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 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

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고,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순영, 판사 이재환, 판사 임 솔